

꿈을 키우고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남중인

2020

학부모 연수자료



2020. 6. 22. (월)



전주남중학교

<http://www.cjnam.kr>

목 차

1. 학교폭력 예방교육	3
2. 『안전모 착용』 캠페인, 자전거 안전교육 자료	6
3. 학생 인권 및 교권보호 교육	9
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자료	13
5. Wee클래스 이용 안내자료	15
6.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17
7. 양성평등/약물 오·남용 예방/흡연 예방교육/가정폭력 예방교육	19
8. 학교 안전공제회 및 감염병질환 안내	23
9.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이해 연수	25
10. 불법 찬조금·촌지 근절	27
1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28
1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양식 안내	30
13.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산출지침 안내	34
14. 2020학년도 1학년 자유학기제 이해를 위한 학부모 연수	39
[부록]	
□ 학교 안내도	41

1. 학교폭력 예방교육

인성인권안전부장 이희로 ☎ 231-5365

I 폭력의 개념

학교 폭력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학교 폭력은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거나, 이에 준하는 연령대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들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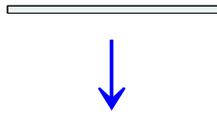
II 폭력의 유형

학교 폭력은 언어폭력을 위시하여 신체 폭력, 위협과 협박, 괴롭힘, 사이버 폭력, 금품 갈취, 따돌림, 성폭력, 폭력 서클 가입 유도, 강제적인 심부름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학교 폭력과 관련되는 대상들은 주로 같은 학교의 선후배들과 동급생, 같은 동네의 동년배들과 선후배들, 학원 등지에서 만나는 동년배 및 선후배들 사이에서 대수롭지 않게 발생하고, 장난으로 치부되면서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III 학교폭력 처리 절차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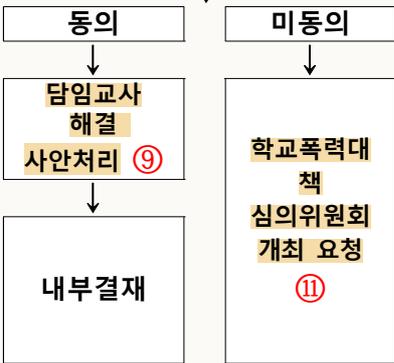
동의 하에 회복조정이
신청된 경우 ㉔

치
유
보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 및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절차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 아닌 경우
(오인신고, 안전사고 등)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인 경우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결정 >
※ 2주 이내 결정, 필요한 경우 1주 연장 가능

- ✓ 관련학생 측 심의위원회 미 개최 의사 서면 확인 ㉓
-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 요건 심의 ㉔

- ①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④ 학교폭력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요건 충족

요건 미 충족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라 하더라도

-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재산상 피해복구 약속을 미 이행한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㉕ 첨부하여 ㉖ 제출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 내부결재

- 사안조사보고서 ㉗
- 자체해결동의서 ㉘
- 심의결과보고서 ㉙ 첨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㉒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

- 학교폭력 사안보고서 ㉚ 제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
1주 연장 가능)

-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 방법(예시)

1	서면사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졸업과 동시 삭제)
2	접촉금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졸업과 동시 삭제)
3	교내봉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졸업과 동시 삭제)
4	사회봉사	출결특기사항란에 기재(졸업후2년후삭제)
5	특별교육or심리치료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 벌금 출결특기사항란에 기재(졸업후2년후삭제)
6	출석정지	출결특기사항란에 기재(졸업후2년후삭제)
7	학급교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졸업과 동시 삭제)
8	전학	학적 특기사항란에 기재 출결특기사항란에 기재(졸업후2년후삭제)
9	퇴학	학적 특기사항란에 기재(영구보존)

IV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역할

오랜 전통을 지닌 본교는 비교적 바른 품성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 다행이지만, 현재 일반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학교폭력 사안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혹시 학교폭력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관찰하신다면, 학생들이 혹시라도 겪을지 모를 피해와 가해의 행동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정보와 주의사항 등을 읽어보신 후 의심되는 사항이 있다면, 학교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학생의 징후

- 몸이 아프다고 하며 학교 가기를 싫어하거나 지각 또는 조퇴가 잦아진다.
- 몸에 상처나 멍자국이 있어 물어보면 그냥 넘어졌다거나 운동하다 다쳤다고 하며 자세한 이야기를 피한다.
- 소지품, 새로 산 운동화, 옷 등이 자주 망가지거나 잃어버렸다고 한다.
- 노트 등에 욕설, 폭언, 협박이나 "죽고 싶다"는 등의 낙서가 있다.
- 용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말없이 돈을 가져간다.
- 웃음이 없어지고 풀이 죽어서 맥없이 있거나 자기 방에 틀어 박혀 나오려 하지 않는다.
-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하거나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다.
- 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고 어머니나 동생 등 자신에게 만만한 대상에게 폭력을 쓰거나 공격적으로 변한다.

▶ 가해학생의 징후

- 다른 아이들을 종종 때리는 모습을 보인다.
-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동이 목격된다.
- 부모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낸다.
- 사주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돈 씹씹이가 커진다.
- 귀가 시간이 늦어지거나 외출이 잦아진다.

2. 『안전모 착용』 캠페인, 자전거 안전교육 자료

인성인권부장 이희로(☎ 231-5365)

가. 자전거 사고발생 현황

- 자전거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약 6~8%에 해당하고 2015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자전거 승차 중 사망자 수가 134명인데 반해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260명을 웃돌고 있어 자전거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발생 현황>

구분	2014년(사망)	2015년(사망)	2016년(사망)	2017년(사망)
자전거	16,664(283)	17,366(276)	14,937(258)	14,063(265)
교통사고	223,552(4,762)	232,035(4,621)	220,917(4,292)	216,335(4,185)

- ※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65.8%가 머리손상이 원인이며, 사망자 중 9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음.

- 안전모 착용시 머리손상을 85% 이상 예방이 가능(미국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공단)

나. 자전거 안전이용 협조

- 최근 자전거 이용인구가 1,000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발생 및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특히, 통학 또는 취미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발생시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 ※ 어린이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 착용(도로교통법 제11조)
- 자전거를 구입하는 경우 안전모 등 보호장비도 함께 구입하도록 하여 평소부터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함. 자전거는 안전모 착용

다. 언론보도 참고자료

- 전주시 '자전거 안전모 착용률 6% 불과' 기초질서 의식 계도 박차(2019.1.2.)

(아시아뉴스통신 = 서현지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1월 02일 13시 22분



전북 전주시 자전거 사고위험지역 지정현황 위치도. (자료출처=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

○ KBS1 뉴스(2014.3.17, 6.23.)



○ SBS 뉴스(2014.3.17.)



라. 교통안전-자전거 안전교육

1) 자전거 이용 시 안전 수칙

- 자신의 몸에 맞는 자전거를 이용한다.
- 안전모(헬멧), 팔꿈치 및 무릎 보호대, 장갑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한다.
-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한다.

- 자동차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는 타지 않는다.
-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자처럼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넌다.
- 항상 앞과 좌우를 잘 살피며 타도록 한다.
- 너무 빠르게 달리지 않도록 하며 내리막길에서는 특히 주의한다.
- 좁은 길에서 큰길로 나갈 때는 반드시 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한다.
- 모퉁이나 커브길은 속도를 줄여 천천히 돈다.
- 핸들을 놓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두 손으로 꼭 잡고 탄다.
- 밤에 자전거를 탈 때에는 백색의 전조등, 붉은색의 후면반사체와 후미등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자전거 탈 때 안전모, 무릎,
팔꿈치보호대 착용하기



좁은 길에서 큰길로 이동 시
좌우를 확인하기



야간 운행 시에는 반사체나
전조등 켜기

2) 자전거를 타기 전 안전 점검 요령

- 브레이크는 잘 작동되는가?(앞, 뒤 브레이크 및 브레이크 고무 상태 점검)
- 타이어의 공기압은 적당한가?
- 핸들이 비뚤어져 있지 않은가?
- 페달에 이상은 없는가?
- 전조등, 후미등에 불이 잘 들어오는가?
-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으며, 경보장치는 작동이 잘 되는가?

3) 자전거 이용 시 해서는 안 될 행동

-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신호를 무시하는 행동
- 지그재그 형태로 왔다 갔다 하며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하는 등 주변에 위험을 주는 행동
-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음악 등을 들으며 자전거를 타는 행동



4) 사고 발생 시 행동

- 전화를 이용하여 119나 보호자, 경찰에 즉시 도움을 요청한다.

3. 학생 인권 및 교권보호 교육

전문상담교사 조정훈(☎ 282-6304)

I 학생 인권 보호

1. 인권의 개념과 내용

오늘날, 인권이란 말은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용어가 되었다.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 학생인권의 개념

- 가. **학생자유권** : 학생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적인 자기결정을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나. **학생복지권** : 학생이 아직 발달상 성숙에 이르지 못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능력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어른으로부터 통제와 보호, 양육,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학생의 권리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 줄 책임은 부모와 국가에 있다고 봄
 - 교육에 대한 권리 / 건강권 / 안전권 /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 적법 절차를 누릴 권리 /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 권리를 지킬 권리
- 다. **학생 평등권** : 자유권과 복지권을 성별, 장애, 용모, 종교, 피부색, 나이, 학업성적, 재산, 부모의 직업 등등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지 않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

3. 가정에서의 인권교육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서의 형제애, 가족 간의 예절, 나아가 이웃 간의 예절 등이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인권존중 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친인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상호협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으리라 믿고 학교에서도 어린이들의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자녀의 입장이 되어 자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올바른 인권지킴이가 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가족의 인권 지수는?

☞ 학생이 체크(✓)해 봅시다.

내 용 (학생용)	체 크		비 고
	○	×	
1. 화가 나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감정 표현을 한다.			※ ○가 몇 개나 되나요? ▶ 3개 이하 인권 지킴이 ▶ 4개-7개 인권 노력이 ▶ 8개 이상 : 서로 존중 하며 더욱 노력해요
2.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때가 더 많다.			
3. 가족들 사이에도 비밀은 지켜지지 않는다.			
4. 부모님은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는다.			
5. 형제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이 귀찮다.			
6. 잘못을 했을 때는 자주 매를 맞는다.			
7.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하신다.			
8. 형제들과 비교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다.			
9.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기도 한다.			
10.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 부모님께서 체크(✓)해 봅시다.

내 용(학부모용)	체 크		비 고
	○	×	
1. 가족과 함께 하는 일들이 많다.			※ ○가 몇 개나 되나요? ▶ 3개 이하 인권 오염이 ▶ 4개-7개 인권 노력이 ▶ 8개 이상 : 서로 존중 하며 더욱 노력해요
2.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는다.			
3. 아이들의 비밀은 언제나 지킨다.			
4. 부모의 감정 상태에 따라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는다.			
5.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한다.			
6. 아이들의 의사표현에 귀를 기울인다.			
7. 아이들이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8. 아이들 앞에서는 부부간에 정중한 언어사용을 한다.			
9.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 애들이 뭘 알겠어?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II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1.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의 개념

교권이란?

- ◆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 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 ◆ 교육법규에 따른 교원의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교수·학습 내용 편성권, 교수·학습 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 요구권 등

교육활동침해란?

- ◆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 관계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언론 등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받는 현상**

2. 교육활동 침해 유형 및 문제점

가.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p style="text-align: center;"><수업권 침해 우려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돌아다니는 행위 -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수군대는 행위 - 교사의 목소리, 행태 등에 빈정거리는 행위 - 수업과 관련 없는 질문으로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 비스듬히 앉아서 교사랑 눈싸움하는 행위 - 코를 골면서 자는 행위 - 책, 노트 등을 준비하지 않고 빈 가방으로 등교하는 행위 	<p style="text-align: center;"><교사에 대한 성폭력 및 폭력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지시에 대한 폭력 행사 - 여교사의 속치마 촬영 - 강제로 어깨동무 하는 경우 - 인터넷에 합성 음란물 사진 유포 - 학급 카톡에서 특정 교사를 놀리는 행위
---	---

나.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p style="text-align: center;"><교사의 인격권 침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 사이버상에 교사를 비방 행위(카톡, 밴드), 사생활(이혼, 이성문제 등)을 다른 학부모에게 유포하는 행위 - 수업 형태, 생활지도를 비하하는 내용을 유포 - 전화, 이메일, SNS 등을 통한 폭언, 협박 등 	<p style="text-align: center;"><교사의 업무방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무실, 교실에서 폭력, 재물을 파손 - 시험 출제 경향 요구,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 달라는 행위 등 - 생활기록부의 정정,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 안전사고 피해 시 학부모의 부당한 협박이나 민원 제기 - 학교폭력 처리에서 교사에 대한 협박, 욕설
--	---

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문제점

- 1) 학생 : - 학습권 침해로 정상적 교육 활동에 저해
- 학교 문화 붕괴로 행복한 학교 생애 저해
- 담임교체 등의 2차 피해 발생
- 2) 교사 : -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서 불안 등으로 사기저하
- 효능감 저하 및 정상적 교육활동 지속 불가

Ⅲ 바람직한 학교의 모습 - 인권 친화적인 학교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관계이다.

1. 인권 친화적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학교 삶 안에서 인권의 가치가 생동하는 학교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 학교구성원의 일상생활 안에 뿌리를 내리는 학교이고, 그런 결과로 구성원의 삶의 실체가 높은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함.
2. 인권 친화적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서로 협력하고 공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함.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법적인 논의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4.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자료

전문상담교사 조정훈(☎ 282-6304)

I 청소년 자살의 원인

가. 사회 환경적 원인

- 1) 가정폭력, 가정불화, 경제적인 어려움 등 가정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 2) 입시 위주의 경쟁적 교육 풍토
- 3) 생명을 경시하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대중문화

나. 개인 심리적 원인

- 1)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 2) 타인의 비난에 민감하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관 형성
- 3) 충동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성격

다. 정신 질환적 원인

- 1)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의 63~95%는 정신과적인 질환(우울증, 반사회적 성격 등)을 동반
- 2) 우울증, 약물남용, 자살기도의 경험이 있는 경우 보통 사람에 비해 자살 위험도가 높음

II 청소년 자살의 경고 신호

가. 행동적 신호

- 1) 부모 몰래 약을 사 모으거나 위험한 물건을 감춘 것이 발견된다.
- 2) 죽음과 관련된 행동(자해, 자살 시도 등)을 하겠다고 위협한다.
- 3) 평소 아끼던 물건을 남에게 주거나 여행을 떠날 것처럼 주변을 정리한다.
- 4) 컴퓨터를 통해 자살사이트 혹은 엽기사이트를 자주 방문하여 심취한다.
- 5) 평소와 다르거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폭력이나 반항적 행동을 보인다.
- 6) 오랫동안 불안정하고 침울해 하던 자녀가 뚜렷한 이유 없이 평화롭거나 즐거워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다.

나. 언어적 신호 (일기장, 개인 SNS 등에 나타남)

- 1)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것 같다.” 등의 좌절, 포기와 같은 표현을 한다.

다. 신체적·정서적 신호

- 1) 친구 관계가 소홀해진다.
- 2) 식욕 부진으로 인해 급격한 체중감소가 있다.

3)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잔다.

Ⅲ 청소년 자살의 특징

- 자신 나름대로의 분명한 동기가 있음
- 충동성이 강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함
-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추락, 투신으로 인한 자살률이 증가함
-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 사후세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음
-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 청소년 전체 사망 중 자살이 2위 원인임
- 자살에는 초기 경고 사인을 보이기에 신속하게 개입하면 자살 방지 가능함

Ⅳ 자살 예방 관련 사이트

- 생명의 전화 <http://lifeline.or.kr>
- 생명의 전화 자살예방센터 <http://www.savelife.or.kr>
- 한국자살예방협회 <http://www.suicideprevention.or.kr>
-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국민재단 <http://www.1318love.com>
- 아동 청소년 가족 상담센터 <http://songsim.catholic.ac.kr>
- 사랑의 전화 상담센터 카운셀24 <http://www.counsel24.com>
- 한국청소년상담원 <http://www.kyci.or.kr>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http://www.kassw.or.kr>
- 소아청소년 정신건강클리닉 <http://drchoi.pe.kr>
- YMCA 청소년상담네트워크 <http://counsely.ymca.or.kr>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http://www.jikim.net>
- counpia.com인터넷 상담 <http://counpia.com>
- 학교폭력상담전문 왕따닷컴 <http://www.wangtta.com>

5. Wee클래스 이용 안내자료

전문상담교사 조정훈(☎ 282-6304)

I 이용 안내

- 운영시간 : 학교 일과 시간 내 수시 → 긴급 특수 상황 발생 시 유연적 대응 가능
- 상담내용
 - 심리·정서상담 : 성격, 학교부적응, 건강/신체 문제, 교우갈등, 가족/대인관계 등 심리·정서적인 문제로 인한 고충 상담 및 심리검사
 - 학습 및 진로상담 : 효과적인 학업, 심층적인 진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기타 : 학교폭력, 성폭력, 인터넷(스마트폰, 게임과몰입)중독, 가족(학부모)상담 등
- 상담방법 및 예방교육
 - 내방상담 : 학생·학부모가 직접 교내 상담실로 내방하여 상담
 - 전화상담 : 학생고충 신고전화 및 전화를 통한 상담
 - 사이버상담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 예방교육 : 각급 교실에서 진행
 - 집단상담, 가족상담, 표준화검사, 진로지도 등
- 상담접수 및 의뢰방법
 - 교사 의뢰(전화, 면담, 의뢰서 등) :



- 학생(학부모) 의뢰(전화, 면담, 의뢰서 등)



- 의뢰방법 : 각반 담임교사, 교과 담당교사, 인성인권안전담당, 교육복지부와 연계하여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선발하고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II

연간 운영계획

영역	프로그램명	추진 일정 (시 기)												비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상담 활동	개 인 상 담	개인상담	○	○	○	○	○	○	○	○	○	○	○	○	
		사이버상담	○	○	○	○	○	○	○	○	○	○	○	○	
		심리검사	○	○	○	○	○	○	○	○	○	○			
		표준화검사		○			○								
		정서행동특성검사		○	○	○	○	○	○	○	○	○			
	집 단 상 담	행복프로그램						○	○	○	○	○			
		친구관계증진			○	○					○	○			
		학교폭력 예방			○	○	○				○	○	○		
	자 활 문 동 상 주 상 담 간	교사 및 학부모	○	○	○	○	○	○	○	○	○	○			
		학부모	○							○					
교육 활동	학 생 교 육	게임과몰입			○						○				
		학교폭력	○							○					
		정신건강				○						○			
		진 로	○	○	○	○	○	○	○	○	○	○			
연계활동	위험군 학생 연계	○	○	○	○	○	○	○	○	○	○	○	○		
	외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연수 및 훈련	수퍼비전			○				○			○				
	연수 및 교육 참여	○	○	○	○	○	○	○	○	○	○	○	○		
기 타	상담실홍보	○													
	Wee Class 운영	○	○	○	○	○	○	○	○	○	○	○	○		
	활동 분석 및 평가					○					○				
	활동보고서 작성	○	○	○	○	○	○	○	○	○	○	○	○		

6.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보건교사 이미나(☎ 284-9799)

▶ 청소년의 이성교제



학생들이 이성교제를 하는 것은 생리적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교제초기에는 만남 자체에 만족하다가 어떤 자극에 대해 곧 적응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으로 좀 더 발전되고 강렬한 자극을 필요로 하여 자칫 충동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건강한 성적 성장을 위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에 대비하세요.

- 내 아이도 이성교제를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가 늘 필요합니다.
- 드라마나 영화를 본 후에 살짝 물어봄으로써 자녀의 이성관을 파악해둡니다.

나.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들어주세요.

- 대화를 시작할 때는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자녀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유도해주세요.
- 자녀가 말하는 동안은 경청해주고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음을 전해주세요.

다. 가정에서도 성교육을 해주세요.

- 자녀에게 가장 최고의 성교육은 사랑과 신뢰가 깃들인 부모에 의한 성교육입니다. 가정에서도 성에 관한 상담, 성에 대한 정보제공, 인간의 성장발달에 따른 교육을 해주세요. 청소년들은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성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부모의 원만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밝은 성을 배우게 되니 가장 훌륭한 모델은 부모님이라 생각하시고 밝고 건전한 성의식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친고죄 폐지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강간과 강제추행·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모든 성범죄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동 성폭력 포르노 제작 사범 최고 무기징역

이른바 롤리타물로 보이는 아동 청소년 대상 음란물의 제작 수입 수출죄에 무기징역형이 추가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으로 처벌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 -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 - 아동청소년음란물인줄 알면서도 가지고 있는 사람

▶남성도 강간피해자가 될 수 있다

법률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고쳐 남성에 대한 성폭력에도 강간죄 적용이 가능해졌고, 성기 이외의 신체 부위에 대한 성폭력에 적용되는 유사강간죄는 그동안 아동청소년 장애인 대상 범위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성인남녀로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성범죄자의 사후 관리와 재범 방지도 강화

연령에 상관없이 성범죄자 등록·관리는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로 각각 일원화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관리 기관이 달라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포함하고 고해상도로 찍은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어른의무)

- ➔ 연세대(2008년)성폭력가해자 155명 범죄의 이유 23%가 음란물과 채팅 때문이라고 대답함 (이 중 20%만이 우연히, 6%는 자발적으로 찾아봄)

반드시 ①음란물차단프로그램 ②유스키퍼(youth keeper) ③그린i-Net을 깔아 주세요.

▶ 범죄예방 성교육을 시켜주세요.

- ➔ 음란물을 보면 만지고 싶고 실제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 ➔ 상상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범죄**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세요.
- ➔ 혹시라도 누군가를 만졌다면, 최대한 빨리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합니다.

▶ 아동성폭력 치료 및 상담지원 전문기관을 활용하세요.

- ➔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 365일 24시간운영
- ➔ 청소년 긴급전화 : 1388
- ➔ ONE-STOP 지원센터 : 전북대학교병원 ☎ 063-278-0117, 063-273-2117

7. 양성평등교육/약물 오남용·흡연예방교육/생명존중교육/가정폭력 예방

보건교사 이미나(☎ 284-9799)

▶ 양성평등이란?

남녀가 동등한 사회적 조건과 지위, 권리, 의무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한쪽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의 자유 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 가정 내에서 부부간의 평등

평등한 부부란? 남편과 아내가 성적 구분에 의해 역할분담이 되어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돈벌이, 집안일, 육아, 의사결정을 분담하는 부부이며

- 1) 남편과 아내의 시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 2)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설거지나 아이를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 3) 여성도 남성만큼 사회활동과 여가시간을 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부

○ 자녀양육·교육에 있어서 평등하려면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성 중립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하십시오.
-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 책임이자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진로, 학업선택, 클럽활동 선택 시 남자와 여자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고정관념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시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딸, 아들 모두 예술, 체육 등을 함께 즐기며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키웁니다.
- 아들이 친절하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라면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감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남성위주의 문화와 사고방식에서 파생된 성차별의식” 때문에 발생하므로(예: 남자 - 능동적, 여자 - 수동적, 남녀의 성욕은 다르다는 잘못된 믿음)잘못된 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양성평등 교육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약물남용의 문제점

청소년기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급성장하는 시기이므로 약물남용이 건강에 미치는 해독은 그 시작 단계에서는 대단치 않은 것처럼 보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성인병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가족 간의 대화로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흡연의 특성

- 가. 흡연시작시기 : 중2-중3 사이에 가장 많이 시작
- 나. 흡연량 : 남학생의 약 80%, 여학생의 80%정도가 10개피 미만
- 다. 가족흡연 : 흡연자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흡연을 많이 합니다.
- 라. 학교생활 : 불만족 할수록, 성적이 나쁠수록, 흡연하는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이 길수록, 흡연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흡연을 많이 합니다.
- 마. 용돈 : 용돈액수가 많을수록 흡연율이 높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습니다.
- 바. 학생이 인지하는 부모의 반응 : 부모가 자신의 흡연여부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인정할 것이라고 인지하는 학생일수록 흡연을 많이 합니다.
- 사. 부모의 양육태도 : 거부적-통제적이라고 지각할수록(애정적-자율적인 양육태도에 비교할 때)흡연을 많이 합니다.
- 아. 정서 : 불안감이 높고 자아존중도와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흡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수줍음을 덜 타는 학생일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흡연을 많이 합니다.

▶ 흡연 환경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해 주십시오.

- 부모님께서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 금연가정의 자녀들은 나중에 흡연할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 자녀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다.
-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주십시오.
 -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습니다.
 - 어른이 되면 담배는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 자녀들과 외식 시에는 **금연 지정 음식점**을 이용합니다.

▶ 생명존중교육-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중요합니다.

자살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자살자들은 필사적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단지 자신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뿐입니다. 대부분 자살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자살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자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합니다.
 - ⇒ 질문은 직접적인형태로, 자살에 대해 자유스럽고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그 감정을 수용합니다.
- 자살이 옳은지, 나쁜지 또는 심리상태가 올바른지, 잘못되었는지 논쟁하지 않도록 합니다.
인생의 가치 또는 도덕관으로 설득하지 말아야 합니다.
- 억지로 무언가를 하도록 다그치지 않습니다.
- "왜"냐고 묻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질문은 심리상태를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 그들의 감정을 동정하지 말고, 공감하도록 합니다. 쇼크 받은 듯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거리감을 만듭니다.
- 비밀 보장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도와줄 사람을 찾아 알려야 합니다.

- 대안이 가능할 것이란 희망을 주도록 합니다. ⇨ 단, 그럴듯한 확신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 가정폭력 예방교육

▣ 가정에서의 이런 상황, 폭력입니다.

- 신체적 폭력: 상대방을 때리거나 흉기 등으로 위협 또는 다치게 하는 행위
- 정신적 폭력: 신체적 접촉없이 말과 행동으로 정신을 학대하는 행위
- 성적 폭력: 배우자 강간등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실행하는 행위
- 경제적 폭력: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하고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 기타 폭력: 상대방의 의견이나 결정권을 무시하고 본인의 의견이나 결정을 강요하는 행위

가. 가정폭력의 특성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적절한 개입, 치료, 예방의 시기를 놓치기 쉬운 특성이 있다. 폭력의 피해자들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지'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과 스스로의 자책감으로 인해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고, 사회적으로도 가정폭력에 개입하는 것을 남의 가정 일에 끼어드는 일로 여겨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가정폭력은 은폐된 채로 피해자들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에 희생된다.

나. 가정폭력 발생률과 유형

지난해는 우리나라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부의 2010년 전국가정폭력 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정폭력 발생률은 2가구 중 1가구에서 가정 폭력이 발생하는 심각성**을 보여 주었다. 이중 부부 폭력 53.8%, **정서적 폭력, 방임,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 학대 등으로 이들 피해자들의 62.7%는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닌,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이며, 피해자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가정 내 일이 아닙니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다. 폭력 가정 아이들의 특성

- 정서적 특성 : 공포심/사회적 관계 철회, 화/공격성, 우울/초조, 가해자에 대한 분노, 낮은 자존감
- 행동적 특성 : 폐쇄/고립, 학대의 기억 재생에 따른 고통, 수동적/무감각한 태도, 퇴행적 행동, 수면 장애, 가출 등
- 반사회적 성격 장애 : 사회규범을 잘 지키지 않고 불안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반복하는 이상 성격을 말함.
- 신체적 장애 : 신체검진이나 각종 검사로는 나타나지 않는데도 많은 신체적 불편감과 증상을 호소

라. 가정폭력은 대물림된다.

폭력 남편의 70% 이상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보고 자란 폭력 가정 출신이라는 점에서 아이 세대에도 가정 폭력이 이어질 수 있다. 아들은 폭력 남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딸은 남성 혐오증, 남성 기피증을 보일 수 있다. **체벌은 폭력 성향을 키워서** 배우자 폭행 가능성이 높고 우울증, 약물남용, 학교 폭력 등 비행의 위험이 높다.

마.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 1. 화 조절하기** : 화는 폭력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화를 조절하는 데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폭력발생을 예방하는 데에 매우 중요합니다.
- 2. 스트레스 관리하기** : 스트레스는 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폭력발생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는 폭력발생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 3. 타임아웃 외치기** : 자신의 몸에서 폭력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신호가 느껴지면 "타임아웃" 기법을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잠깐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타임아웃은 간단하지만 책임 있게 사용하면 폭력을 조절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 4. 부부싸움 잘하기** : 부부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자신들한테 적합한 싸움법을 부부가 함께 생각해보는 것은 생산적인 싸움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
- 5.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 우리나라에는"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에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매일 매일의 일상에서 오고 간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 6. 칭찬 한마디의 기적 이룩하기** : 칭찬이 가장 필요하면서도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칭찬은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나타냅니다.

【출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lawhome.or.kr/>)]

바. 가정폭력 신고 의무 규정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피해자들이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 잘 알려지지 않으므로 피해자들은 계속 폭력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시설이나 상담소, 교육기관, 의료기관 종사자는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쉼터)

여성 긴급 전화(☎ 1366)나 **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8. 학교안전공제회 및 감염병질환 안내

보건교사 이미나(☎ 284-9799)

▶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에게 보험금처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본교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매년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이 사고로부터 입은 피해를 신속 . 정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공제급여의 청구절차

- 학생이 학교생활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공제급여를 받고 싶으신 경우 사고발생 직후 **담당선생님과 보건교사에게 24시간 이내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급여시스템에 신청)
- 치료 완료 후 보건교사에게 알려주시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줍니다.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한 후 보건교사에게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후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공제급여 청구 후 심사를 거쳐 약 한달 안에 공제급여가 지급됩니다.

공제급여 청구 시 제출서류

- ① 공제급여 청구서
- ② 외래(퇴원)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본
- ③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영수증 원본제출, 카드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④ 사고학생 주민등록등본
- ⑤ 청구인 통장사본(공제급여 수령 통장), 청구인 생년월일
※ 청구금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와 치료부위가 '치아'인 경우: 진단서 제출

⇒ 공제급여 지급여부 결정을 위하여 공제회 측에서 추가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우편발송이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FAX제출 불가.

나. 공제급여 지급 대상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장의 관리 . 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체육대회 등에 발생한 학생사고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등·하교 중에 발생한 학생사고
-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자살한 경우
-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

다. 공제급여 지급 제외되는 사고

- 구타·다툼·폭력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애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 한 것이 명백한 경우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 없이 발생한 자살, 자해 등의 사고
- 자동차 사고, 체육시설(빙상장,수영장 등)사고, 각종 수련원 사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정 감염병의 종류

구분	법정 감염병의 종류
제1군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제2군	디프테리아, 백일해 , 파상풍,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 풍진, 폴리오, B형 간염 , 일본뇌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제3군	말라리아, 결핵 ,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 수막염 ,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광견병), 신증후군 출혈열, 인플루엔자(=독감, 계절성 독감, 2009년 유행 신종플루도 2010년부터 3군 일반 인플루엔자에 속함. 독한 감기가 아니며 감기와 완전 다른 질병임)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매독,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인간광우병)
제4군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출혈열(마버그열, 라싸열,에볼라열 등),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새로운 바이러스의 인플루엔자가 발견될 때, 2009년 유행 신종플루는 3군 일반 인플루엔자에 속함) , 야토병, 큐열,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아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지정	C형 간염 ,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침규콘딜로마,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VRSA)감염증, 메티실린내성 포도상구균 감염증(MRSA),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균(MRAB)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위 표 안의 질병만 완치된 기간까지 결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되는(출석인정결석) 법정 감염병입니다.

그 이외의 비법정 감염병인 감기, 유행성 각결막염(전염성 눈병), 무균성 뇌수막염 등은 출석인정 안 되며, **질병결석(병결)** 처리됩니다

(**병결 역시 병원 증빙서류 담임선생님께 제출**, 병원 증빙서류 있어도 비법정 감염병은 병결)

☆ 다른 자세한 내용은 전주남중학교 홈페이지→학교소식→급식·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이해 연수

교무부장 김순애 ☎ 282-6304

‘청렴 대한민국’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신고·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도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 불이익조치 금지 ● 원상회복 조치
- 신분 비밀보호 신분보호 ● 책임감면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청탁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형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과태료
금품 등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자	과태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자	형벌

3·5·10 예외규정은 무슨 의미인가요?

☞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어떤 형태의 금품수수도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 차원에서 우리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가액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제7조 관련)

-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 가액범위 3만원
- 선물 :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 가액범위 5만원
-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 가액범위 10만원

이제 혈연, 지연, 학연 청탁이 통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불법 인·허가, 면허처리」 등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면 안됩니다. (법 제5조제1항)

부정청탁의 행위유형 14가지

-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 업무의 처리·조작
-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 채용·승진 등 인사에 개입
-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비정상적 거래
-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에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 사항 묵인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 법령을 위반한 행역 관련 업무처리
-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예외사항

•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는 △법령이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공공적인 특정 행위 요구, △공공기관 업무 관련 확인·문의 등 적법한 절차나 행위를 통해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것 등입니다.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사회, 신뢰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들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8조제5항)

이런 경우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예외사항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은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오랜 친구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불특정 다수 대상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 해당됩니다.

10. 불법 찬조금 · 촌지 근절

교무부장 김순애(☎ 282-6304)

가. 불법찬조금 및 촌지의 뜻

- **불법찬조금**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 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 **촌지** : 학부모가 교원에 제공하는 금품으로 잘못된 관행이며,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부패행위에 해당함

나. 불법찬조금 및 촌지의 유형

- ▶ 학교 또는 학부모회 등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임의로 모금하는 것
- ▶ 스승의 날, 명절, 수학여행, 체육대회, 현장학습 등 교육행사 시 학부모께서 화환, 도시락, 식사비 등을 제공하는 것
- ▶ 각종 학교 행사나 표창 등에 대한 보답으로 담임선생님에게 제공하는 금품 및 향응, 화환 등
-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절차를 벗어나거나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기부행위

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의 원인

- ▶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과 잘못된 관행
 -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 내신 성적 등에 대한 막연한 기대 심리에서 불법찬조금 조성 및 촌지 수수
- ▶ 학교의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의지 부족
 - 학생교육이라는 특수 관계 속에서 의례적으로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었고 부패행위라는 인식 결여
 - 촌지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부패행위의 시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인식부족

라.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 홈페이지(www.jbe.go.kr)/전자민원/원클릭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
- 촌지수수 신고(☎ 063-239-3300 교원인사과)
- 불법찬조금 신고(☎ 063-239-3576 예산과)

11.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연수

교무부장 김순애(☎ 282-6304)

가. 주요 내용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 ②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단위학교 책무성 강화

<특별법 제5조 제2,3,4항 '학교장의 책무' >

-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학교장 결재)

- 사전 예방 및 출제관리 강화
 - 학교 내 사전예방 노력 강화
 - 출제 단계에서 선행출제 등 오류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 강화
 - '선행교육 및 선행출제 금지' 관련 출제 전 교사 연수 실시

(권장사항)

- 시험출제 전 '선행출제 금지' 교사 연수 강화
- '동교과협의회' 등의 선행 출제여부 상호 점검 및 회의록 작성
- 원안지 학교장 결재 시 이원목적분류표에 '선행출제여부' 항목 추가 등

다. 선행교육 출제 점검(평가문항)

점검시기	(1학기) 기말고사 전후	(2학기) 중간고사 전후
점검과목	(1학기) 수학, 영어, 사회, 역사, 도덕	(2학기) 수학, 국어, 과학
	※ 수학은 매학기 점검	※ 해당 학기 편성 과목만 점검
점검내용	(선행교육) 편성과 교과별 진도 계획의 일치 여부(정보공시 자료)	
	(선행출제) 선행학습 유발 여부(지필평가 출제문항)	

다. 선행학습 폐해 연수 자료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됩니다.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됩니다.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유·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양식 안내

교무부장 김순애(☎ 282-6304)

1. 기본 방침(현장체험학습 제외)

-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체험학습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 학생이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학 학교장과 위탁학교장, 그리고 각 담임, 보호자가 공동으로 학생지도에 임하여야 한다.
- 소속 학교장 및 담임교사는 체험학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 학급 담임교사는 단체 교환학습이 종료되면 체험학습기간 중의 출석상황을 확인하여 정리한다.
-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의 예시
예)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연행·도피,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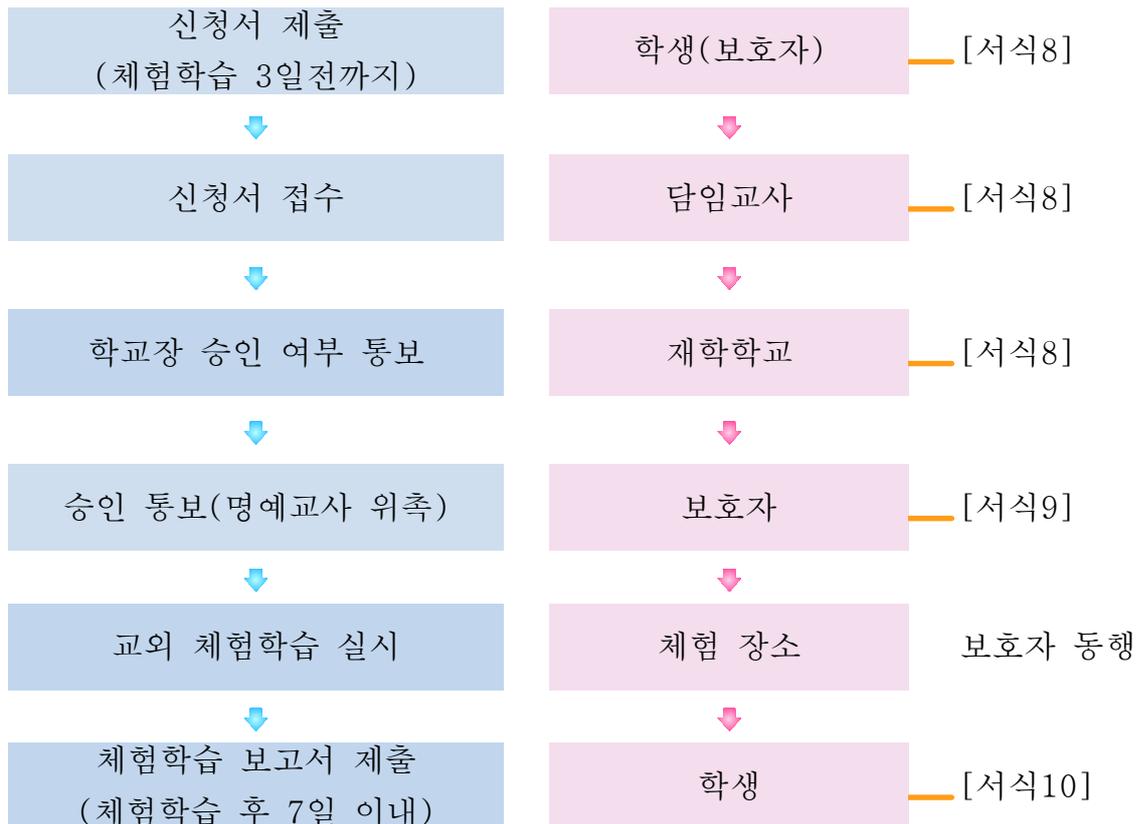
1 교외체험학습 일과 운영

-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8]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바.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9]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o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서식 8> : 학교 제출용(보호자용)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연 번 : 2020-001

체험학습 참가자	학년	반	번	성명	전화	비고

기간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일간)					
장소						
인솔보호자	기간	학생과의 관계	성명	전화		
체험학습 주제	<p style="color: blue;"><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친지 방문 및 효도 체험학습 · 국내·외 역사문화 탐방 및 체험학습 등 					
학습내용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학생 : (인)

신청인 보호자 : (인)

(전주남중) 학교장 귀하

결 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서식 9> : 교외체험학습 사후지도를 위한 참고 자료 <학생용>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누 가

()학교	제 ()학년 ()반 ()번	이름 :
-------	-------------------	------

■ 언 제

2020년 월 일부터 ~ 2020년 월 일까지

■ 어디에서

교외체험학습 장소	▶
--------------	---

■ 무엇을, 어떻게, 소감(필요시 사진 등은 뒷면 부착)

무엇을	
어떻게	
소 감	

결 재	담 임
	전 결

13. 2021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산출지침 기준 안내

3학년부장 허기두(☎ 231-5365)

구분	항목	배점	반영비율	
교과	일반교과	1-2학년	90점	30%
		3학년	90점	30%
	체육·예술교과	전학년	60점	20%
	소계		240점	80%
비교과	출결상황		30점	10%
	봉사활동상황		15점	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창의적체험활동상황		15점	5%
	소계		60점	20%
총계		300점	100%	

위의 표와 같이 점수를 반영하여 석차를 산출한 후 개인별 석차 백분율을 산출한다.

$$\text{개인별 석차백분율} = 100 \times \frac{\text{개인석차}}{\text{내신성적산출대상자수}}$$

I. 교과영역

1. 반영시기 : 1학년 2학기 학기말 성적부터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

1) 전기고등학교 내신성적 산출은 2020년 11월 6일을 기준으로 산출

교과 성적은 3학년 2학기 1차고사까지 성적(3학년 2학기 수행평가 제외) 반영

2) 후기고등학교 내신성적산출은 2020년 12월 18일을 기준으로 산출

교과 성적은 3학년 2학기 지필평가(1차,2차)와 수행평가 성적을 합산하여 반영
3학년 2학기 수행평가는 2020년 12월 18일 이전까지 완료한다.

※ 마이스터고 : 3학년 1학기 까지 성적반영

2. 반영방법 : 내신점수 환산평점 240점 (300점의 80%)

① 일반교과 성적 75%, 체육·예술교과 성적을 25% 반영

② 교과 내신점수 환산 평점은 일반교과 성적 180점, 체육·예술교과 성적 60점

③ 교과 성적 중 일반교과 성적은 1-2학년과 3학년 성적을 각각 50%의 비율로 반영 체

육·예술교과 성적은 전체 학년 성적을 통합하여 반영

- ④ 1-2학년 성적이 없는 경우는 3학년 성적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3학년 성적이 없는 경우는 1-2학년 성적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 ⑤ 재취학 등의 이유로 성적 중 일부가 석차로 되어 있는 경우, 성취평가제에 의한 성적만으로 산출한다.
- ⑥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시행으로 성취도 환산 성적이 없는 학기의 교과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

※ 전·후기 고등학교 구분

모집 시기	대상 학교 및 학과계열
전기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계열 고등학교, 체육계열 고등학교, 예술계열 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특성화고등학교(전문계열, 대안계열) • 일반고등학교(전문계열, 예체계열)
후기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고등학교(일반계열) • 외국어고등학교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교과 성적 산출 공식

구분	학년	교과 성적 산출 공식	배점
일반 교과	1-2	$\left(\frac{\text{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 \frac{\text{이수과목 원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times 0.01 \right) \times 15$	90
	3	$\left(\frac{\text{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 \frac{\text{이수과목 원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times 0.01 \right) \times 15$	90
	소계		180
체육·예술 교과	전학년	$\frac{\text{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times 12$	60
합계			240

※ 이수과목이란 성취평가제에 의한 성취도 환산이 가능한 과목을 말함.

※ 교과의 성취도 환산점수 : A=5점, B=4점, C=3점, D=2점, E=1점

※ 졸업생의 경우, 세부 시행 지침(3./ 마./ 2))에 따라 적용하되, 부득이 본 산출공식에 따라 산출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수, 우수(체육·예술교과) : A - 우, 보통(체육·예술교과) : B
- 미, 미흡(체육·예술교과) : C - 양 : D - 가 : E

II. 비교과영역

1. 출결상황

- 1) 결석일수 기준으로 산출, 질병 및 기타(학교장이 인정한 결석)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일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결석일수의 산정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름)
- 2) 미인정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를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함.
(각 학년별 3회 미만은 0일로 계산)
- 3) 내신점수 환산 평점 30점 만점

<학년별 출결상황 내신점수 산출표 >

미 인 정 결 석 일 수	출 석 점 수
0일	10 점
1 - 3일	9 점
4 - 7일	8 점
8 - 11일	7 점
12 - 15일	6 점
16 - 19일	5 점
20일 이상	4 점

2. 봉사활동상황 : 내신점수 환산 평점 15점 만점

- 1) 봉사활동 상황 학년별 점수 부여 방법에 따라 학년별 점수를 합산한 뒤 봉사활동상황 점수 산출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2) 2020학년도는 15점 만점이 18시간에서 12시간으로 조정됨.

※ 봉사활동상황 점수 산출 공식

$$(1\text{학년 점수} + 2\text{학년 점수} + 3\text{학년 점수}) \div 3$$

※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체험활동상황 : 내신점수 환산 평점 15점 만점

- 1) 학년 당 점수 5점을 합산하여 15점
- 2) 학년 당 점수 5점 중 3점은 기본점수이며, 2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각 부여 대상별 점수는 0.5점으로 한다.

가) 행동 덕목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는 표창별 점수를 부여
(1학년 때 봉사상과 예절상을 받은 경우 각 0.5점씩 1점 부여).

나)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 유공자는 한 학기 이상의 경력만 적용하며, 유공 점수는 학년별 유공 항목당 하나만 인정한다.(3학년때 1학기 반장과 학생 회장을 한 경우 자율활동 항목 유공자로 하나만 인정하여 0.5점 부여). 다만, 3학년 2학기 자율활동 및 동아리활동 유공자의 경우 내신 산출 기준일까지를 한 학기로 산정한다.

※ 동일 유형 항목의 가산점 중복할 수 없음

다) 가산점 인정범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만을 인정

[2020 전주남중 내신산출 가산점 부여 항목 (항목 당 점수는 0.5점 기준)]

순	유형	세부유형	기준	점수
1	학교장 표창자	자율활동 우수자	각종 자율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0.5점
		동아리활동 우수자	각종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0.5점
		진로활동 우수자	각종 진로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0.5점
		기타 표창자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등의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표창별 0.5점
2	자율활동 유공자	학생자회 임원, 학급 실장부실장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학생	유공자별 0.5점	
3	동아리활동 유공자	동아리활동반 정·부반장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학생으로 담당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 결재를 득한 자	〃	
동일 항목이 아닌 한, 다양한 유형의 가산점을 모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도위원회 혹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가해자로 회부가 되어 징계조치를 받은 학생은 해당 학년(학기) 유공자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2021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일정표>

※ 아래 일정은 추후 휴업 연장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전기고				후기고		
	학교유형	특수목적고(3교) 특성화고(28교) 일반고(전문7교, 예체4교) [총 42교]		특수목적고(1교) 자율형사립고(1교) 익산고(1교) [총 3교]	비평준화 일반고 (54교)	평준화 일반고 (38교)	
전형일정	특수목적고(4교) (산업수요 맞춤형고) [총 4교]						
내신산출기준일	'20.9.30.(수)	'20.11.6.(금)		'20.12.18.(금)			
내신산출완료일	'20.10.14.(수)	'20.11.13.(금)		'20.12.23.(수)			
원서교부·접수	'20.10.19.(월)-10.22.(목) 17:00까지	특 정 전 형 고 교 (전 형 일 제 외)	'20.11.16.(월) - 11.17.(화) 17:00까지	일 반 고 교 (전 형 일 제 외)	'20.11.20.(금)- 11.24.(화) 17:00까지	상산고: '20.12.7.(월)-12.10.(목) 외고: '20.12.22.(화)-12.24.(목) 일반고: '20.12.28.(월)-12.30.(수)	
전형기간 (전형일)	'20.10.28.(수)-10.30.(금)		'20.11.18.(수)		'20.11.25.(수)- 11.27.(금)	자기주도학습 전형일 '20.12.7.(월)- '21.1.4.(월)	
합격자 발표	'20.11.3.(화) 10:00		'20.11.19.(목) 10:00		'20.11.30.(월) 10:00	'21.1.4.(월) 10:00	'21.1.8.(금) 10:00
학교배정발표						평준화일반고 배정 '21.1.15.(금) 14:00	
등록기간	2021.1.18.(월)-1.22.(금) 17:00까지 [전·후기고 공통 정시모집 등록기간]						
추가 모집	원서접수	2021.2.4.(목) - 2.5.(금) 17:00					
	전형일	2021.2.8.(월) - 2.9.(화)					
	합격자발표	2021.2.10.(수) 10:00					
	등록기간	2021.2.15.(월) - 2021.2.16.(화) 17:00					
수시 추가	원서접수	2021.2.23.(화) - 2021.5.31.(월)					
	전형 및 등록기간	수시 추가모집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은 기간 내 수시 (다만, 입학시키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특기사항	* 전북과학고의 전형은 8월부터 / * 평준화 일반고 추가모집, 수시추가모집 없음						
전형군별 학교명단	특수목적고(4) (산업수요 맞춤형고) -군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한국경마축산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특수목적고(3) 전북과학고, 전북체육고, 전주예술고 특성화고(28) 전주생명과학고, 전주공고, 전주산업정보고, 완산여고, 군산상고, 군산여상고, 이리공고, 진경여고, 정읍제일고, 칠보고, 학산고, 남원용성고, 남원제일고, 덕암정보고, 전북하이텍고, 한국게임과학고, 한국한방고, 진안공고, 전북유니텍고, 오수고, 한국치즈과학고, 강호항공고, 부안제일고, 줄포자동차공고, 고산고, 세인고, 푸른꿈고, 지평성고 일반고 전문계(5) 한국전통문화고, 원광정보예술고, 함열여고, 영선고, 서림고 일반고 예체계(4) 한국전통문화고, 원광정보예술고, 남원국악예술고, 한국마사고 ※ 밑줄 : 2개 전형 실시 고교	특수목적고(1) 전북외고 자율형 사립고(1) 상산고 일반고(1) 익산고 ※ 상산고(전국단위) 별도 전형일정(예정) 2020.12.7.(월) - 2021.1.4.(월)까지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예정일	평준화고(38) 전주(23교):전북사대부고, 전주고, 전라고, 전주제일고, 전주여고, 전주솔내고, 양현고, 동암고, 완산고, 우석고, 전일고, 전주신흥고, 전주영생고, 전주해성고, 전주한일고, 호남제일고, 전북여고, 유일여고, 전주근영여고, 전주기전여고, 전주성심여고, 중앙여고, 전주사대부고 군산(7교) :군산고, 군산여고, 군산동고, 군산제일고, 군산영광여고, 군산중앙여고, 군산중앙고 익산(8교) :이리고, 이리여고, 원광고, 전북제일고, 이리남성여고, 이일여고, 원광여고, 남성고 비평준화고(54) 정읍고, 정읍여고, 호남고, 배영고, 정주고, 서영여고, 태인고, 남원고, 남원여고, 성원고, 남원서진여고, 김제여고, 덕암고, 진안제일고, 무주고, 안성고, 장수고, 산서고, 임실고, 순창제일고, 동계고, 순창고, 고창고, 고창북고, 부안고, 백산고, 부안여고, 서림고, 설천고, 백화여고, 고창여고, 영선고, 한들고, 여산고, 함열고, 함열여고, 성일고, 인상고, 신태인고, 왕신여고, 인월고, 김제고, 김제서고, 만경고, 만경여고, 금산고, 한별고, 완주고, 마령고, 안천고, 무풍고, 해리고, 위도고, 익산고			
전형138(133교)	4교	40교(중복 5교 포함)		3교(중복1교)	92교		

14. 자유학기제 이해를 위한 학부모 연수

1학년부장 박정현(☎ 282-6304)

1. 자유학기란?

개념	자유학기제 로고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의 자아이해 및 탐색, 소질과 적성, 삶의 가치관을 키울 수 있도록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유연한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토의, 토론, 탐구, 실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개선하여 운영하는 제도	<p>“나를 공부하자”</p>  

2. 자유학기 활동 4개 영역

영역	내용
진로탐색활동	학생이 적성과 소질을 탐색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교육 실시
주제선택활동	교과 연계, 범교과 영역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 동기 유발
예술체육활동	다양하고 내실 있는 예술, 체육 교육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 계발
동아리활동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 기반 조직 운영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및 특기, 적성 계발

3. 자유학년제 운영의 이해

구분	자유학년제
대상 학기	1학년
평가	교과성취도 미산출(성적 없음)
자유학기 활동	4개 영역 221시간 이상
기록	<p>교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체육·예술 과목은 실기능력, 교과적성 포함) 등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문장으로 기록</p> <p>자유학기 활동: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 활동 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학생의 활동 과정 및 참여 태도, 활동 후 성장 정도 등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문장으로 기록</p>

4. 자유학기 평가

- 가. 성취수준에 기반한 교과융합수업, 모둠수업, 거꾸로수업, 프로젝트 수업, 협동수업, 토의 토론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 실시
- 나. 관찰평가, 자기평가, 모둠평가, 동료평가 등 수시평가 실시
- 다. 학교생활기록부 전교과 서술형 기재(내신 성적 미반영)

구분	일반학기	자유학기
평가 방법	지필평가 + 수행평가	과정 중심의 다양한 평가
평가 내용	교과 내용 중심	교과 활동 내용 + 참여도, 흥미도
평가 주체	교사 평가	교사 관찰 평가 + 동료평가, 자기성찰평가
평가 결과	점수 산출 및 성취도	서술식으로 기록

5. 자유학기 학교생활통지표: 학기별 1회 발송

6. 자유학기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에게 이렇게 해 주세요.

많은 대화와 관심 및 연습, 복습을 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스스로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살펴 주세요.



공감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길러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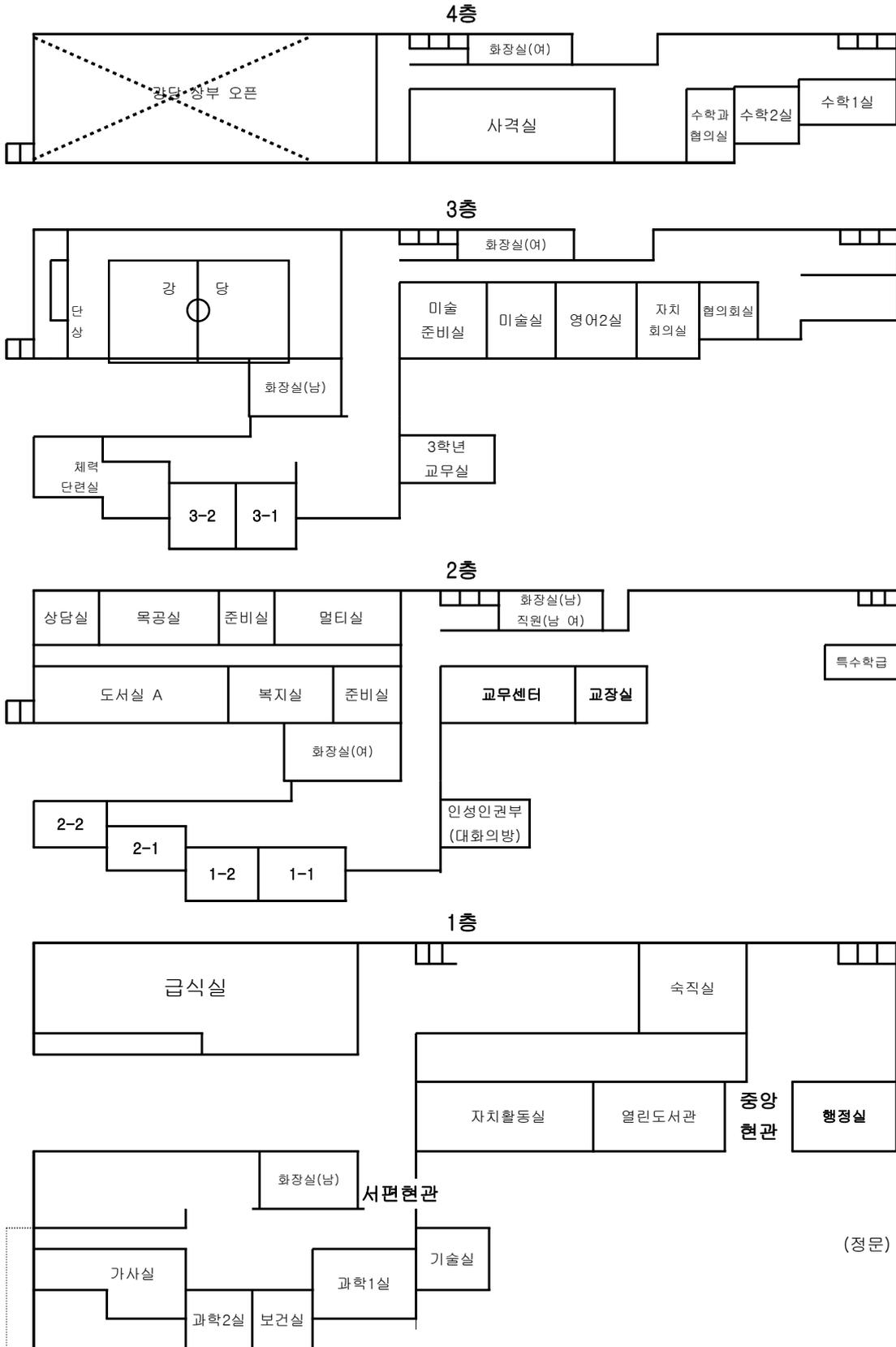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켜보아 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자유학기 홍보자료 발췌

□ 학교 안내도



(정문)